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김정호·김성환·박희승

김남희 • 신영대 • 허종식

정진욱 • 박해철 • 강유정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수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 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에 2021년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 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이용 현 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

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지전수조사사업 에 관한 기본방향,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 라.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 록 함(안 제6조).
- 마. 농지전수조사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

사 항목은 기본항목, 소유항목, 이용항목 등으로 구분함(안 제9조).

-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구·읍·면 단위 담당 공무원, 조사대상 농지가 속한 시·구·읍·면의 주민 등 중에서 농지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농지에 관한 정보에 반영하 도록 함(안 제13조).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 2. "농지전수조사사업"이란 전국에 있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농지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1.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 2.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 3. 농지전수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 4.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
- 5. 농지전수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 6. 그 밖에 농지전수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농지전수조사사업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8조에 따른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농지전수조사위원회) ①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지전수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
 - 2.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 3.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책임실행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조사사 업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실행기관(이하 "실 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실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농지전수조사의 대상) ① 농지전수조사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조사 항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기본항목: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
 - 2. 소유항목: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 3. 이용항목: 경작자명, 자경 여부, 재배품목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 4. 보전항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
 - 5. 정책항목: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농지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제10조(농지조사원의 임명·위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 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단위 담당 공무원
- 2. 조사대상 농지가 속한 시·구·읍·면의 주민
- 3.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4. 그 밖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이 농지전수조 사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조사원의 임명·위촉 절차, 자격기준, 업무범위 및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 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토지에의 출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실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실행기관의 임 직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

려는 때에는 출입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의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3조(조사결과의 활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관 정보 중 농지에 관한 정보에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소관 정보 중 농지에 관한 정보에 반영하고, 농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 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 관의 장은 그 결과를 농지에 관한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국회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종합보고서

- 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준수 의무) 농지전수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위탁받은 실행 기관의 임직원 및 조사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과태료) ①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출입·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